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운용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민대표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제5조 )

나. 물이용부담금 제도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물이용부담금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용 및 인천시의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br>○ 성 명:<br>○ 연락처: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 위원회를 말한다.
3.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인천시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 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대학에서 환경·수자원·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수질보전하천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현황
2.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용
3. 인천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